

대 회 규 정

제1조 본 대회는 제37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라 칭한다.

제2조 본 대회는 (사)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 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제4조 본 대회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하키협회 2023년도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 이어야한다.
2. 지도자(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다.
3. 동일 소속 팀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단체(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 이 이중으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대회 세부 종별에 중복 출전할 수 있다.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하며, 일반부는 리그전으로 진행한다.

제6조 본 대회 경기 시간은 전 종별 총 60분(15분*4쿼터)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쿼터 종료 후 2분 2쿼터 종료 후 10분, 3쿼터 종료 후 2분으로 한다.

1. 토너먼트전은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쏜 아웃을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2. 쏜 아웃은 쏜 아웃 경기규정에 따른다.
3. 리그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채점방법은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1)이긴 경기 수 (2)골득실 차 (3)다득점 (4)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네가지 가 같은 경우 쏜 아웃 5회로 한다. 쏜 아웃을 진행하는 팀의 경기명단은 해당 경기 종료 10분 전 제출 되어야 한다. 시간 내 준비가 안 되는 경우 패배한 것으로 본다.
4. 3개 팀이 동점일 경우 추첨(1위, 2위, 3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추첨순서는 대진 번호 순번으로 한다.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18명 엔트리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한다.

제8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여 몰수패 를 당할 경우 5:0으로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경기에 11명의 선수가 되었을 시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단, 대진 추첨 후 고의적으로 특정 경기에 대하여 출전을 포기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회조직위원회에 회부 한다.

경기 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

(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 득점차가 발생 시 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본 대회 경기 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 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 시간의 경기만 실시한다.
2.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정규시간의 경기를 실시한다.
3. 쏜 아웃은 득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며, 5명 중 미실시 선수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부터 실시한다.

제10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 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 대회 중 발생한 각 종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경기 도중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며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2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몰수게임으로 처리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 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
(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
-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에 회부한다.
-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옐로우, 레드카드)와 선수는 [완전퇴장(레드카드)]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기 중 발생한 사안의 이의신청(부정선수, 심판판정, 경기장 질서문란)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단장, 부장, 감독 명의로)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이의 신청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이에, 사안은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대회경기위원장, 대회경기부위원장, 대회심판위원장, 대회심판부위원장)에서 결정한다.
- 1-5호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우리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대회 임원 및 심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주의 및 경고 * 3~5일 활동정지 * 6~10일 활동정지 * 11~15일 활동정지
	나. 판정 오심 및 과실/경기진행 미숙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라. 승부조작	
2.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주의 및 경고 * 3~5경기 출전정지 * 6~10경기 출전정지 * 11~15경기 출전정지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 승부조작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주의 및 경고 * 3~5경기 출전정지 * 6~10경기 출전정지 * 11~15경기 출전정지
	나. 심판에 대한 폭행	
	다. 부정선수 출전	
	라. 선수상호간 폭행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사. 승부조작	
4. 단체(팀)	가. 심판판정 불복 및 경기진행 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출전정지 3년 이상
	나. 경기장 폭행 난동	
	다. 승부조작	

- 벤치에 지도자가 없는 경우 몰수 패 처리한다.

8. 팀 벤치에 감독,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경기 중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9. 본 대회 참가 신청 마감 후 불참한 팀은 감독 벤치 활동 6개월 정지 처리한다.
10. 상기 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경기 중 시행 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12조 본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관 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본 대회 대표자회의 시 대진 추첨은 팀 관계자(단장, 부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만 참가할 수 있다.(선수는 불가하며, 팀 관계자가 아닌 자가 추첨 시 재 추첨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